

## 대한민국 (2 등급)

대한민국(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위해 검찰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육 과정 구축, 선원 근로감독관 대상 인신매매 교육, 새로운 피해자 식별 지침 및 인신매매 근절 국가행동계획의 입안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역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보고기간에 비해 지속적이거나 진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의 인신매매 기소율은 2020 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인신매매법의 강요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들이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처벌한다는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인신매매법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추방하기도 하였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 특히 한국 국적 어선에서의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식별과 관련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피해자 식별 지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범죄자들에게 1 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2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우선 권고사항:

경찰, 출입국, 노동, 사회복지 부처 공무원들은 피해자 식별 지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착취 및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을 증가시켜야 한다. •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 선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해야 한다. • 2021 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률의 시행이 2000 년 유엔 인신매매방지(TIP) 의정서에 명시된 인신매매의 정의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범죄로 취급하며, 관련 범죄에 대해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성착취 인신매매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 특히 한국 국적 어선에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노동착취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외국인 피해자 관련 사건에서 경찰과 출입국 간의 조율을 강화하는 등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 인신매매범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을 포함한 충분한 처벌을 선고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및 수사 시 피해자 중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 집행 담당관들에게 외상 인식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경찰, 출입국, 노동, 사회복지 부처 공무원들이 성착취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수립, 이행해야 한다.

• 국제법상의 정의된 인신매매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법 집행 담당관, 검찰, 사법 공무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증명서류 압수 행위 금지 등, 이주선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어선의 노동환경을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들, 특히 남성, 아동,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매매 등의 기타 범죄와 구분하는 인신매매 관련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성착취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 및 근로자의 모국에서 인력 모집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채용 및 알선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고용주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 기소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 집행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기소율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다. 형법 제 31 장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착취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을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엄격한 수준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하여서는 강간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준하는 처벌이다. 형법 제 289 조(인신매매)는 국제법상 인신매매 정의와는 어긋나게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가 요구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범죄의 필수 요소로서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 288 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와 제 292 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가 제 289 조에서 다루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 조는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를 피해자의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정의했다. 그러나, 동법의 다른 여러 조항이 그러한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른 인신매매로 규정된 형사범죄가 없다 보니 법 집행기관과 검찰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상이했으며, 공무원들이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매매, 약취, 가정폭력, 기타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 등의 관련 범죄와 혼동했을 수 있다. 2021 년 4 월 공포되어 2023 년 1 월 효력이 발생하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사회가 정의한 인신매매의 개념에 근접하게 “인신매매 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였으나 처벌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자들이 기존 법적 틀에서 다양한 법령에 따라 인신매매범을 기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사 관련 법령은 기존의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 노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처벌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과 인신매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기존의 법률체계를 인신매매범 기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인신매매범들이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이 새로운 법의 시행이 인신매매범 기소 및 유죄판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형법의 모든 하위 조항에 걸쳐 피해자와 범죄자에 대한 일반 통계를 유지했지만, 인신매매 사건들을 상업적 성매매 등의 관련 범죄와 충분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보고한 법 집행 조치 중 국제법에 정의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 집행 조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2021 년 한 해 동안 최소 64 건의 잠재적인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20 년 수사한 인신매매 범죄 건수는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동 성매매로 기소된 258 명과 유죄판결을 받은 212 명의 인신매매범들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총 297 명의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2020 년 332 명) 226 명의 가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2020 년 229 명), 28 명의 인신매매범들에게 1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2020 년 28 명) 했다고 보고했다.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대다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는 억지력을 저하시켰고 정부의 전반적인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약화시켰으며, 특히 수사와 기소에 협조한 피해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정부가 대다수의 인신매매범들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아 인신매매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들이 인신매매 활동을 재개했다고 추정되는 보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 경찰은 임금체불, 과도한 근로시간 등 인신매매를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하여 염전에서 일하는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 혐의를 수사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러한 혐의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정보에 입각한 접근 절차를 활용하지 않았고,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비정부기구가 보고하였다. 정부가 어선들에 대한 충분하거나 빈번한 감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정부기구들이 보고했는데, 이는 강제노동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한 선장과 그 밖의 선원들에 대한 처벌없이 최소한의 규제만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및 착취와 관련한 사건들을 기소했다 라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출입국 담당관 및 근로감독관들이 일부 잠재적 노동착취 인신매매 사건들을 행정위반 건으로 처리했다고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들이 보고하였다.

법무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협력하여 최근 인신매매 기소 현황을 연구하고 관련 결과를 수사관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형법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신매매범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에 충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하였다. 경찰청은 12 회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통해 180 명의 경찰들에게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하여 2021년 10월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였다. 정부가 트라우마 정보에 근거한 절차 및 치료에 대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인신매매 방지교육을 제공하였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법무부는 신임 검사들을 위한 인신매매 관련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베테랑 검사들에게 인신매매 방지교육을 제공했다고 보고하였다.

해양수산부도 선원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식별 교육을 제공했다고 보고하였다. 과거에 피해자 지원 비정부기구들은 경찰, 검찰, 정부가 피해자와 면담 시 트라우마 정보에 입각한 관행을 따르지 않는 통역사들을 제공하여,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 및 증언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전 보고서들은 법 집행 당국이 사전에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으며, 불분명한 이유로 일부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부채에 기반한 강압과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본국에서 이뤄진 채용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식하여 관련 사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장기 또는 영구 거주에 대한 선택권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인신매매범 수사에 증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성착취 인신매매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 실무자 1 명을 수사했으나, 인신매매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공무원들도 기소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 및 보호 노력을 지속했다. 공무원들이 식별된 혹은 지원시설에 연계된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계속해서 집계하거나 제공하지 못하여 정부의 전반적인 피해자 보호 노력 중 일부 측면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법 집행 당국은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를 여성가족부가 운영 혹은 출자한 지원시설에 연계하였으나, 정부는 그 가운데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0 년 6,743 명 대비 2021 년 6,311 명에게 자체 지원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17 곳의 지원 시설을 구축하여 2021 년 3,964 명의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20 년 11 명 대비 2021 년 (여성 1 명 남성 9 명, 성인 9 명 아동 1 명으로 구성된) 10 명의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했다고 보고하였다. 인신매매범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다양한 산업에서 강제노동 시키고 착취한다는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착취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식별하지 않았으며 (이전 보고기간에는 6 건), 어떠한 노동착취를 당한 이주선원을 식별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선 경찰, 검찰 및 해안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배포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지원 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공식 절차는 부족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 년 3 월에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지원 지침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로운 피해자 식별지침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러한 지침들은 보고기간 종료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법 집행 당국이 빈번히 피해자 사전 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피해자 식별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식별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출입국, 법 집행관들은 실제로 그 지침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공무원들은 성착취 인신매매 지표를 식별하기 유흥비자 소지자들을 인터뷰하여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식별된 피해자의 수는 보고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가 해당 비자 소지자가 인신매매 징후를 보고한 경우 출입국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법 집행 당국과의 첫 접촉 시점부터 보호·지원 시스템에 인도하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전담팀을 운영했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서비스 지원시설로 연계하는 경우 담당자들이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연계절차를 정부가 마련하지 않아 일부 당국은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들을 서비스 지원시설로 연계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법무부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협력하여 2021 년 380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정, 법률,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법무부가 지원하는 스마일센터에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외상 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사들도 배치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특화된 트라우마 정보에 근거한 치료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는지 여부는 보고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곳 이상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이들 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사회적 지원, 쉼터, 교육, 재활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여성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지만, 정부는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남성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들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특히 남성, 장애인, 외국인, 아동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당국이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일관되거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보호소 체류 기간을 3 개월만 허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신매매범 기소에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당국은 해당 기간을 연장하였다. 정부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수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정부는 그러한 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G-1 비자를 발급해 주어 최장 1 년간 한국에 체류하고 일하면서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인된 피해자 수를 집계하지 않아 G-1 비자를 발급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법무부는 이전에 외국인 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해도 처벌을 면제 받았다고 보고했으나, 해당 보고기간 동안 몇 명의 피해자가 이와 관련된 혜택을 받았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의 추방에 대한 법적 대안은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당국이 때때로 외국인 피해자들을 구금 혹은 추방하였으나 해당 보고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법은 개인이 강압에 의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이 인신매매범들이 강요한 불법 행위에 대해 종종 피해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한다는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국은 성매매로 개개인을 체포할 때 인신매매 지표를 사용하여 심사하지 않았고,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 지표로 피해자 확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잠재적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추방한

사례를 일부 보고하였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은 당국이 인신매매범들의 기소에 협조한 일부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증인들을 추방했다고 보고하였다.

경찰청은 착취 사실을 자진 신고한 피해자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에 대해 출입국 관리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변호사 혹은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을 동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이 방침을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

##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계속했다. 해당 보고기간 동안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인신매매 관련 중앙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맡아 관계 기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2021 년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첫번째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나 해당 보고기간 내에 완료하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공영방송 프로그램과 소셜 미디어 광고 캠페인을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며, 공공부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해 1 시간의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고하였다.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 관계자들은 학교,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성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공항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의 불법성을 알렸다. 정부가 잠재적 인신매매 범죄 신고용 핫라인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는 계속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13 개국 언어로 운영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통화건수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2021 년 한 해 상업적 성착취에 관련된 개개인과의 통화가 3,048 건 접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주 선원들의 상담을 위한 2 곳의 콜 센터를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버마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하였으며, 2021 년

접수된 수천 건의 통화 중 근로감독관들이 추가 조사를 하도록 추려낸 32 건의 잠재적 선원법 위반 사례에 대해 보고하였다.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범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44 곳의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통역,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자 및 장애인 등 인신매매의 위험이 있는 집단을 고용한 사업장들을 점검했다. 정부는 양자간 양해각서에 공공 부분 기관만이 관련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비도덕적인 채용기관들의 관행을 인지하면서도 그 채용기관들을 조사했다는 보고는 하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파견기관들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부과한 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한국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 사례에서는, 고용주들이 법을 위반하여 일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정황 등,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이들의 고용허가제 위반 사실을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보도들과 국회 질의가 있는 후,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업 부문에서 사업장 6곳을 재조사하고 143건의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고용제한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여 착취의 취약성은 더욱 커졌으나,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을 조사하는 동안 착취 혹은 노동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대신 이들은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착취 사실을 증명하는데 수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자들을 착취한 고용주들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 혹은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7월 부터 이주노동자들을 임시 건물에 거주시킨 농·수산업 부문 고용주들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했는데, 일부 고용주들에게는 9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비정부기구들이 밝혔다.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노동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을 강제노동으로 착취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선원법 상 한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 및 휴식 시간, 초과 근무수당 및 유급 휴가에서 제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주선원들의 고용체계 규제 향상, 과도한 근로시간 방지, 최저임금 설정, 깨끗한 식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2021년 1월 발표하였으나,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가 이러한 규정들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위반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일부 이주선원들은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정부기구들이 보고하였다. 이주선원들의 최저 임금은 한국인 선원 대비 1/5 수준으로 낮았고, 휴일 혹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2021년 7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압수를 금지하고자 선원법을 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선주들만을 금지 대상으로 하여 빈번하게 근로자의 증명서류를 압수하는 선장이나 인력관리 업체들은 처벌받지 않고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2021년 9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스스로의 증명서류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 과정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았으며, 민관기관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이러한 모집 과정을 규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약 5,000달러에 달하는 표준 고용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다. 정부는 2021년 어선 177척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정기 선박 근로감독을 위한 어선들의 귀항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 한 선박들이 귀항을 피할 수 있고 많은 선박들이 한 번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바다에 머무르게 되어 강제노동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노동자들이 하선을 바라는지 확인하고자 연승어선에서 일하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러한 설문조사 중 인신매매 지표에 대한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근로자들이 미래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하선에 동의하는데 주저했다고 보았다. 관련 법은 또한 착취성 임금 공제나 근로자에게 채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아 인신매매범들이 부채에 기반한 강압을 통해 선원 이주노동자 및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대행사들에게 자사의 웹사이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2021년 5월 송출국의 채용 기관들이 근로자들에게 부과하는 부채에 기반한 강압의 원인이 되는 채용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 농민들이 중개인들을 통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도록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해당 여성들 중 일부는 성착취 인신매매와 가사노동으로 착취당했다.

## 인신매매 개요

지난 5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한편,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피해자들도 착취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가출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한국 여성과 아동들을 주점, 나이트클럽, 기타 유흥업소 혹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출장 서비스를 이용해 성매매로 착취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 구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신매매범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한국인 여성 및 아동들을 모집하고 포르노 영상제작 참여에 강요하기 위해 노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인신매매범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 빈번히 부채에 기반한 강요를 통해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한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주로 중국,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로코, 기타 아시아 국가 및 중동, 남미 출신의 남성 및 여성들을 한국 내에서 강제노동과 성착취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유흥업소 업주 혹은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성착취 인신매매범들은 대부분 필리핀과 태국 출신인 E6-2 호텔·유흥 비자를 소지한 일부 외국 여성들을 항만과 미군부대 인근의 “외국인 전용” 주점 등 술집과 클럽에서 착취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군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클럽은 2020년 초부터 문을 닫았다. 직업 중개인, 비양심적인 채용 대행사, 주점 및 클럽 운영자나

점주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가수 혹은 공연자라는 거짓 약속으로 모집하지만, 대신 피해자들에게 장시간 술과 음료를 팔며 클럽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다. 안마시술소 모집인과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전문 안마사로 채용한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때때로 여권 압수, 물리적 폭력, 추방 혹은 폭력 협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충분한 휴가 일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학대와 언어·물리적 폭력을 당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한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도록 급여 지급이 보류된다. 일부 주점 운영자들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하여 피해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은 공장이나 다른 업종에 단기 채용된다는 허위 약속을 받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인신매매범들에게 여권을 압수당하고 클럽에서의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받는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모집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일부 여성들은 한국 도착 후 성착취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취약하다. 일부 한국 남성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여행 제한 및 격리 요건들로 인해 인신매매범들이 해당 보고기간 동안 일부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 내 여성들에 대한 착취 위험이 더욱 증가하였다. 유흥업소가 영업 손실을 겪게 되자 일부 인신매매범들은 피해자들을 성매매로 몰아가기 위해 다양한 착취 형태를 사용하였다. 일부 중개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클럽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자주 인신매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인신매매범들은 북한 여성을 성착취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청,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과거 자진 신고한 일부를 포함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추방된 사례들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수사 기관과 출입국 당국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신체적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진 한국 남성들에게 어선, 양식장, 염전 및 가축농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 비양심적인 근로자 모집인들은 때로는 수천

달리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를 근로자들에게 부과해 부채에 기반한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특히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노동에 일조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약 200,000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분야에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도 고용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공식 통계는 없다.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여행 제한으로 인해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비정부기구들이 보고하였다. 일부 합법 외국인근로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한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온실, 선적 컨테이너, 기숙사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피지와 태평양의 다른 항구로 향하는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쳐가는 경유국이다. 세계 최대 규모 원양어선 중 하나인 한국 어선단에서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의 학대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모집인, 선주, 선장 및 직업 알선인들은 종종 부채에 기반한 강제력을 사용하여 한국 국적 혹은 한국 소유 선박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으로 착취한다. 보고에 의하면 주로 인도네시아 출신인 약 4,000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선박들에 고용되어 있다. 한국의 원양어선들은 빈번히 어획물을 해상에서 환적하여 귀항하지 않고도 1년 혹은 그 이상을 바다에 머무를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해도 당국에 신고하거나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25개의 세계 최대 규모의 연승 어선에 비해 한국의 연승 어선들이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고, 하루 가장 긴 시간 조업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해상에서 보낸다고 한다. 채용 대행업체 및 직업 중개인들은 때때로 연안 선박에 고용되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선원에게 \$13,00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빈번히 선원들에게 과도한 모집 수수료를 부과하여 부채에 기반한 강제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빈번히 첫 3개월 분의 급여 지급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류당해 계약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은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선원들은 휴식 및 휴일이 제한된 채 하루 2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근무를 강요받고, 선장들로 부터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받으며, 급여가 공제되고 부적절한 물과 음식이

제공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채용 대행업체와 선장들은 고용이탈을 막기 위해 연안 및 원양어선 선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고에 의하면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법집행 당국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처벌이나 추방 등의 조치로 위협하였다. 이전 보고기간 중 비정부기구들은 경찰을 포함한 일부 공무원들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했고 일부 개개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